

청주교육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 09. 18. 규정 제135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 및 각 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(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사정방법, 모집형태, 전형일정 등)
4. 기타 입학전형 업무시행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